

[사업장 무재해운동] 인간중심의 밝고 안전한 사업장 조성

무재해운동은 인간존중의 이념을 바탕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여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 운동을 추진함으로써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나아가 산업재해를 근절하여 인간 중심의 밝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고자 1979.9.1.부터 시행

추진경과

1979. 9. 1.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무재해운동 시작
1980년 대	일본에서 전개하고 있던 도해를 이용한 위험예지훈련기법 도입
1989. 10. 1.	무재해운동 업무 일부 이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1992. 8. 21. ~ 1993. 8. 30.	무재해운동을 전국민 운동으로 확산하고자 1천만 명 서명운동 전개 (대통령,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 종교계 대표 저명인사 등 총 10,097,609명 서명)
1997. 7. 1.	무재해운동 업무 이관(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공단)
2018. 1. 1.	- 무재해 목표달성 기록인증제 폐지 결정('18년까지 인증제 유예) - 무재해운동 개시신청서 접수 중단
2019. 1. 1.	무재해 목표달성 기록인증제 폐지(사업장 자율운동 전환)

무재해운동의 이념

무재해운동은 인간존중의 이념에서 출발한다. 인간존중이란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간을 너, 나 할 것 없이 차별하지 않고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한다. 경영자는 인간존중의 이념을 기반으로 해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단 한명도 재해를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간존중 경영철학을 가져야 하고, 관리감독자(Line)들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한 사람의 근로자도 재해를 당하게 하지 않겠다는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며, 근로자는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키고 또한 동료의 안전을 해치지 않겠다는 실천의지를 가져야 한다.

무재해운동의 3대원칙

- (1) 무의 원칙 : 단순히 사망재해나 휴업재해만 없으면 된다는 소극적인 사고가 아닌, 사업장 내의 모든 잠재위험요인을 적극적으로 사전에 발견하고 파악·해결함으로써 산업재해의 근원적인 요소들을 없앤다는 것을 의미한다.
- (2) 안전제일의 원칙 :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궁극의 목표로써 사업장 내에서 행동하기 전에 잠재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파악·해결하여 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 (3) 참여의 원칙 : 작업에 따르는 잠재위험요인을 발견하고 파악·해결하기 위하여 전원의 협력하여 각자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